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정관

제정 2020. 04. 17.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정관

(제정) 2020.. 정관 제0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Cheongyang Community Foundation」(약칭 : CCF)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통합형중간지원조직으로서 민관협치에 기반한 마을공동체지원 및 먹거리통합지원 등과 같은 공익사업과 지역 활성화 사업수행의 효율성·전문성·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역량 있는 통합형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해 공동체 회복·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길 17”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
3. 직매장·가공센터·레스토랑 운영(주류판매 포함)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사업
4. 농업인·소비자의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5. 농산물·특산물 연구개발, 가공지원 및 소비촉진 등 사업
6.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사업

7. 농업·농촌 관련 정보제공 및 6차 산업 육성 사업
 8. 비즈니스 룸 임대 및 창업보육 업무 사업
 9.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활성화 사업
 10.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
 11. 마을만들기, 읍면 단위 지역개발 지원 사업
 12. 주민자치 육성 지원 사업
 13.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14. 공익활동 지원 사업
 15.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16. 도시재생 지원 사업
 17. 귀농인·귀촌인 지원 사업
 18.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 등 먹거리 관련 연구용역 컨설팅, 행사진행, 교육 등의 사업
 19.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및 농산어촌개발 등 공동체분야 관련 연구용역, 컨설팅, 행사진행, 교육 등의 사업
 20.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고 각 사업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사업수행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 및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익사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사무처장(상임이사) 포함)
3. 감사 2명

- ② 사무처장(상임이사)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임원(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으로 임명 하되, 그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의 부군수가 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결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재단 사무처장(상임이사) 및 재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의 실·과장으로 하되 이사의 1/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선임직 이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주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재단 설립에 따른 최초 임명 시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감사는 회계업무 팀장(군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선임직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재단 설립에 따른 최초 임명 시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안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군수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1조(사무처장(상임이사)) ① 사무처장(상임이사)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채용에 의거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재단 설립에 따른 최초 임명 시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한다.

② 사무처장(상임이사)은 재단 내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이사장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처장(상임이사)의 임면 및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지 못한 때에는 차기임원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되 그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별도 규정에 의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구성) ① 이사회는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며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7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각종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법령 또는 조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과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제23조(설치)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5조(설치) 이사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논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군 및 관련단체, 금융기관 등이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표2]와 같다.

⑤ 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4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사업, 시설의 운영과 관리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수익과 운영재산, 군 또는 관련단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외부기부금, 운영·위탁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회계구분 및 원칙) ①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인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정으로 설치한다.

③ 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규정으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의 취득·임차·양수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33조(사업계획 등의 작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은 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분야 사업비의 경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전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한다.
- ③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난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받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재단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6조(계속비) 재단은 매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7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군수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장 조직 및 직원

제39조(사무처의 설치)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획·운영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무처를 둔다.

제40조(조직) 재단의 조직은 별도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다.

제41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자농촌지원센터, 공공급식센터 직원 및 푸드플랜 관련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등은 기존 중간지원조직 재단설립 취지의 승계, 업무의 연속성 및 지속·효율적 추진과 고용의 안정을 위해 재단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며 재단에서의 직위 및 직급 등의 적용은 고용승계 이전 피고용자의 직위 및 직급, 계약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고용승계 대상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군과 협의하여 근무지 및 근무여건 등을 결정한다.
- ③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3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군 및 출연단체·기관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46조(운영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사장이 시행한다.

②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시행한다.

1. 직제, 인사, 보수, 기금, 재산관리, 회계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47조 (공고의 방법) 재단은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청양군청 및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48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청양군의 관련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칙 (2020. 04.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설립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이라도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재)부자농촌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발기인)가 기명날인한다.

명 칭		청양군
사무소 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법인등록번호		307-83-01257
대표자	성 명	청양군수 김돈곤 (직인)
	주민등록번호	570810-1*****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91 902호(디엠에이스빌아파트)

[별표 1]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주요 사업

분야	사업내용
공동체 활성화 · 회복 지원사업	▶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 공익활동 지원사업 ▶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
농산물 가공 및 제품 개발	▶ 가공품 개발 ▶ 인증관리 ▶ 가공시설관리(소규모가공 포함) ▶ 6차산업화
공공급식지원	▶ 학교급식지원 ▶ 공공급식지원
어린이·노인 영양관리, 위생관리 및 교육	▶ 어린이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생산조직화 ▶ 기획생산, 홍보 ▶ 농가교육 및 컨설팅 ▶ 사업관리(유성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운영)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 마을자원조사, 자료DB ▶ 컨설팅, 주민교육 ▶ 도농교류, 농촌관광 등 연대·협력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 주민자치(동네자치)
사회적경제 지원	▶ 조직발굴 육성 ▶ 유통판매 ▶ 협력시스템
도시재생지원사업	▶ 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 대응) ▶ 청양읍중심지 ▶ 신활력사업단 ▶ 역량강화
학술연구용역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 등 먹거리 분야 연구용역 ▶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및 농산어촌개발 등 공동체분야 관련 연구용역
행사진행	▶ 행사 진행 및 관련 물품 대여 등

[별표 2]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수 량	평 가 액 (천원)	비 고
출자금(현금)	예금통장	100,000	농협은행 청양군청출장소